

직제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단위조직별 기능조정 및 직무 명확화

2. 개정 이유

- 가. ESG경영처에 ESG경영 관련 총괄 업무를 분장하고, 환경부문 경영 관련 계획 수립 및 성과점검 업무를 명확화함
- 나. 경영지원처에 안전보건관리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팀 명칭 변경과 사옥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를 명확화함
- 다. 금융심사처 내 보증사후관리 업무분장을 명확화함
- 라. 채권관리실에 「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세칙」에 따른 업무를 반영하고 개인보증 채무자 유형에 개인채무자를 구분하여 업무를 명확화함
- 마. 기금제도처 내 기금제도팀 업무 중 수요자대출업무를 세분화하여 반영함
- 바.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정산업무 중 보조금법에 따라 정산 대상 및 검증 주체를 명확화하고, 도시재생 수탁과제에 대한 신규업무를 반영함
- 사.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와 주택도시금융센터간 업무조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 관리체계를 강화함
- 아. 도시재생리츠 관련 업무 등을 도시혁신기획처로 이관하고, 리츠 사업처 내 리츠업무를 임대리츠 업무로 명확화*함

* (현행) 리츠기획팀, 리츠제도팀 → (변경) 임대리츠기획팀, 임대리츠제도팀

자. 홍보실 내 언론대응 및 홍보협력 업무 명확화를 위해 홍보업무를 조정 배치하고, 팀 명칭을 변경*함

* (현행) 상생협력팀, 홍보언론팀 → (변경) 홍보협력팀, 언론팀

차. 감사실 내 업무범위 명확화 및 내부 업무분장 사항을 반영함

3. 의견제출

이 제.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기획조정실
- 담당자(이메일) : ryusin33@khug.or.kr
- 전화/팩스번호 : 051-955-5315 / 051-955-530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조직 및 인력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조속한 사규 개정 필요

별첨 직제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부.

【별첨】

직제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[별표1](제4조 관련) <u>본부 및 부서 내 팀 편성</u>	[별표1](제4조 관련) <u>본부 및 부서 내 팀 편성</u> * 개정내용 붙임1 참조	부서 내 팀 편성 조정
[별표2](제5조제1항 관련) <u>부서별 분장업무</u>	[별표2](제5조제1항 관련) <u>부서별 분장업무</u> * 개정내용 붙임2 참조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	팀 개편 반영 및 부서 내 분장업무 조정

[붙임1] 제4조 별표1(본부·단 및 부서 내 팀 편성) 일부 개정안

현 행			개 정 안			개 정 사유
본부	부서	팀	본부·단	부서	팀	
경영 전략 본부	경영지원처	경영지원팀, 조달관재팀, <u>혁신안전팀</u>	경영 전략 본부	경영지원처	경영지원팀, 조달관재팀, <u>안전보건팀</u>	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에 따른 팀 명칭 변경
주택 도시 기금 본부	리츠사업처	<u>리츠기획팀, 리츠제도팀</u>	주택 도시 기금 본부	리츠사업처	<u>임대리츠기획팀, 임대리츠제도팀</u>	리츠업무 세분화에 따른 팀 명칭 변경
사장 직속 기구	홍보실	<u>상생협력팀, 홍보언론팀</u>	사장 직속 기구	홍보실	<u>홍보협력팀, 언론팀</u>	홍보업무 분장에 따른 팀 명칭 변경

[붙임2] 제5조제1항 별표2(부서별 분장업무) 일부 개정안

1. 경영전략본부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E S G 경 영 처	E S G 경 영 팀	1. ESG경영 총괄 <u><신 설></u>	E S G 경 영 처	E S G 경 영 팀	1. (현행과 같음) <u>가. ESG경영 계획 수립·추진</u> <u>나. ESG경영 성과점검 및 피드백</u> <u>다. ESG경영 관련 협의체 운영</u>	<u>ESG경영 총괄</u> <u>업무 명확화</u>
		2. 사회적가치 실현 총괄 <u>가. 사회적가치 실현 계획 수립·추진</u> <u>나.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점검 및 피드백</u> <u>다. 사회적가치 실현 과제 발굴 및 제안, 과제추진실적 점검</u> <u>라. 사회적가치 실현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</u>			<u><삭 제></u>	<u>ESG경영 총괄</u> <u>업무에 포함 및</u> <u>정부정책</u> <u>변화에 따라</u> <u>삭제</u>
E S G 경 영 처	E S G 경 영 팀	3. 일자리창출 총괄 <u>가.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 및 대정부 협의</u> <u>나. 일자리 창출 성과점검</u> <u>다. 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, 과제추진실적 점검</u> <u>라.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</u>	E S G 경 영 처	E S G 경 영 팀	2.~3. (현행 제3~4호와 같음)	
		4. 동반성장 추진 업무 <u>가. 동반성장 추진계획 및 과제 등 수립·추진</u> <u>나.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·조사</u> <u>다.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 운영</u>			4. 환경경영 총괄 <u>가. 환경경영 계획 수립·추진</u> <u>나. 환경경영 성과점검 및 피드백</u>	<u>환경보전 등</u> <u>경영 관점으로</u> <u>문구수정 및</u> <u>에너지관리</u> <u>업무는</u> <u>경영지원처에서</u> <u>관리함에 따라</u> <u>삭제</u>
E S G 경 영 처	E S G 경 영 팀	5. 환경정책 및 에너지관리 총괄 <u><신 설></u>	E S G 경 영 처	E S G 경 영 팀	5. 정보공개 청구 총괄 <u>가. 정보공개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점검</u> <u>나.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·처리</u> <u>다. 정보공개 관련 심의회 운영</u>	<u>정보공개 조문</u> <u>정비 및 업무</u> <u>명확화</u>
		6. 정보공개청구 관련 접수·처리				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		7. 경영공시 총괄 관리 <u><신 설></u>			6. (현행 제7호와 같음) 가. 경영공시 운영계획 수립·추진 나. 경영공시 교육·점검 및 불성실공시 관리·감독	경영공시 조문 정비 및 업무 명확화
	성과평가팀	1.~6. (생략)		성과평가팀	1.~6. (현행과 같음)	
경영지원처	경영지원팀	1. 서무 가.~바. (생략) <u><신 설></u> 2.~5. (생략) <u><신 설></u>	경영지원처	경영지원팀	1. 서무 가.~바. (현행과 같음) 사. 소모품의 구입 2.~5. (현행과 같음) 6. 계약업무(조달청 업무 포함) 총괄	업무 명확화 및 현행 업무체계와 일치
	조달관재팀	1. 물품의 조달, 관리 및 처분 2. 일반공사 및 용역에 관한 입찰과 계약(성과공유제 포함) 3. 관재 가. 본·지사 등 시설물 건설 나. 영업부서의 신설, 이전, 확장 등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다. 업무용 동·부동산과 무형고정자산의 구입, 관리 및 처분 라. 경비, 당직 및 보안업무(개인정보보호 업무 제외)의 총괄		조달관재팀	1. 물품의 조달, 관리 및 처분 <u><삭 제></u> 2. 관재 가. 본·지사 등 시설물 건설 나. 영업부서의 신설, 이전, 확장 등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다. 업무용 동·부동산과 무형고정자산의 구입, 관리 및 처분 라. 사옥 관련 실내건축, 전기통신, 기계, 소방 등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(혁신안전팀 3호에서 이동) 마. 일반공사에 관한 입찰과 계약(현행 2호에서 이동) 3. 경비, 당직 및 보안업무(개인정보보호 업무 제외)의 총괄	현행 업무체계와 일치 및 표현 수정, 편제의 적정성 확보
	혁신안전팀	1.~2. (생략) 3. 재난·재해 및 안전관리 총괄 4.~6. (생략)		안전보건팀	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<삭 제></u> 4.~6. (생략)	팀 명칭 변경 및 조달관재팀 2호 라목으로 이동

2. 금융사업본부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금융사업처	분양보증심사팀	1.~4. (생략) <신 설>	금융사업처	분양보증심사팀	1.~4. (생략) 5. 보증사후관리(‘개인보증처 전세보증팀’ 제3호, ‘개인보증처 임대보증팀’ 제3호 및 주택도시기금본부 취급 보증 제외) 가. 보증사후관리 제도의 제·개정 및 조사연구 나. 보증사후관리기준 마련 및 질의회신 다. 보증사업장의 단계별 현장점검 기준 마련(계약자 명단, 입주금 및 공정률 확인 등) 라. 입주금관리사업장(공동계좌포함)에 대한 자금인출기준 마련 마. 보증사업장 중 공정미달 사업장의 관리기준 마련 바. 보증사업장의 담보물관리기준 마련 사. 보증사고시 초기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관리 아. 보증사고시 관리센터 이관기준 마련 6. ‘PF금융센터 PF금융관리팀’ 제2호 및 ‘지사 보증관리팀’ 제2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승인업무	보증 사후관리 업무 팀간 편제 조정
	금융보증심사팀	1.~2. (생략)		금융보증심사팀	1.~2. (현행과 같음)	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	심사관리팀	1.~2. (생략) 3. <u>보증사후관리(‘개인보증처 전세보증팀’ 제3호, ‘개인보증처 임대보증팀’ 제3호 및 주택도시기금본부 취급 보증 제외)</u> <u>가. 보증사후관리 제도의 제·개정 및 조사연구</u> <u>나. 보증사후관리기준 마련 및 질의회신</u> <u>다. 보증사업장의 단계별 현장점검 기준 마련(계약자 명단, 입주금 및 공정률 확인 등)</u> <u>라. 입주금관리사업장(공동계좌포함)에 대한 자금인출기준 마련</u> <u>마. 보증사업장 중 공정미달 사업장의 관리기준 마련</u> <u>바. 보증사업장의 담보물관리기준 마련</u> <u>사. 보증사고시 초기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관리</u> <u>아. 보증사고시 관리센터 이관기준 마련</u> 4. <u>‘PF금융센터 PF금융관리팀’ 제2호 및 ‘지사 보증관리팀’ 제2호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승인업무</u>		심사관리팀	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<삭 제></u> 4. <u><삭 제></u>	3호 및 4호 <u>삭제 업무는</u> <u>분양보증심사팀</u> <u>5호 및 6호로</u> <u>업무 이관</u>

3. 자산관리본부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채권관리실	기업채권관리팀	1. (생략) 2. 기업보증 채권관리 가~바. (생략) 사. 기타 채권관리관련 업무 3.~5. (생략)	채권관리실	기업채권관리팀	1. (현행과 같음) 2. 기업보증 채권관리 가~바. (현행과 같음) 사. 기업보증 채무자 은닉재산 신고접수, 기초조사 및 포상금 지급 아. 기타 채권관리관련 업무 3.~5. (현행과 같음)	<u>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세칙이 제정됨('22년 9월 시행)에 따라 관련 업무 반영</u>
	개인채권관리팀	1. (생략) 2. (생략) 가.~바. (생략) 사. 기타 채권관리관련 업무 3. 개인보증 관련 특수업체 관리 가.~나. (생략) 다. <u>특수업체 채권의 출자전환 심사·승인, 취득주식 관리 및 처분</u> 라. <u>특수업체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 신청 후 절차의 취소·폐지 또는 종료까지의 제반 관리</u>		개인채권관리팀	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~바. (현행과 같음) 사. <u>개인보증 채무자 은닉재산 신고접수, 기초조사 및 포상금 지급</u> 아. 기타 채권관리관련 업무 3. 개인보증 관련 특수업체 관리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회생·파산 개인채무자 및 특수업체 채권의 출자전환 심사·승인, 취득주식 관리 및 처분</u> 라. <u>회생·파산 개인채무자 및 특수업체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신청 후 절차의 취소·폐지 또는 종료까지의 제반 관리</u>	<u>은닉재산 업무 반영(상동)</u> <u>개인보증 관련 채무자 중 법인 이외 회생·파산 개인채무자를 구분하여 추가</u>
	관리제도팀	1.~4. (생략)		관리제도팀	1.~4. (현행과 같음)	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관리센터	채권관리팀	1. 특수업체 인가 등 특수업체 제반 관리업무 2.~4. (생략)	관리센터	채권관리팀	1. 특수업체 인가 등 특수업체(개인보증 관련 회생·파산 개인채무자 포함) 제반 관리업무 2.~4. (생략)	개인보증 관련 채무자 중 법인 이외 회생·파산 개인채무자를 구분하여 추가
	보증이행팀	1.~3. (생략)		보증이행팀	1.~3. (현행과 같음)	

4. 주택도시기금본부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기금제도처	기금제도팀	1. (생략) 가~나. (생략) 다~라. <신설> 2. 기금 수요자대출 가. 기금 수요자 대출제도 운영 및 관리 나. 기금 수요자대출 관련 신상품 개발 3. 기금대출 심사 가. 신청접수 및 심사 등 관련 제도 수립·운영 나. 심사정보 연계기관 등 대외 협력	기금제도처	기금제도팀	1. (생략) 가~나. (생략) 다. 기금 사업자대출 예산 집행실적 관리 라. 기금 사업자대출 예산 수요추정 및 예산편성 지원 2. 기금 수요자대출 가. 기금 수요자 대출제도 운영 및 관리 나. 기금 수요자대출 관련 신상품 개발 다. 기금 수요자대출 예산 집행실적 관리 라. 기금 수요자대출 예산 수요추정 및 예산 편성 지원 마. 수요자대출 민원 등의 접수 및 처리 3. 기금대출 자산심사 가. 기금e든든 자산심사 등 관련 제도 수립·운영 나. 대출심사 정보 관련 연계기관 대외 협력	기금 대출심사 업무내용을 세분화하여 업무 명확화
						기금대출 심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련 업무 명확화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	도시금융제도팀	1.~3. (생략)		도시금융제도팀	1.~3. (현행과 같음)	
	도시정비정책지원팀	1.~4. (생략)		도시정비정책지원팀	1.~4. (현행과 같음)	
도시정비처	도시정비관리팀	1.~3. (생략)	도시정비처	도시정비관리팀	1.~3. (현행과 같음)	
	도시정비정산팀	1. 도시재생사업 <u>보조금</u> 정산 지원 가. <u>보조금</u> 정산업무 처리기준 마련 및 질의회신 나. <u>정산 위탁회계법인</u> 선정 및 관리 다. <u>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</u> 라. (생략) <신설>		도시정비정산팀	1. 도시재생사업 <u>국고보조금</u> 정산 지원 가. <u>국고보조금</u> 정산업무 처리기준 마련 및 질의회신 나. 정산· <u>결중</u> 위탁회계법인 선정 및 관리 다. <u>정산 실무회의체 운영</u> 라. 정산업무 관련 대외협의 마. <u>정산담당자 역량 강화</u>	<u>보조금법에</u> <u>따른 정산 대상</u> <u>및 검증 주체</u> <u>명확화</u>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		2. 보조금 정산·검증 업무 가. <u>목적외집행 정산·검증</u> <u><신 설></u> 나. 기타 정산 관련 업무			2. <u>국고보조금 정산·검토</u> 업무 가. <u>계속사업 사전검토</u> 나. <u>준공사업 정산심사 지원</u> 다. 기타 정산 관련 업무	<u>23년도</u> <u>정산업무 대외</u> <u>요구 개선사항</u> <u>등 반영</u>
	도시 정비 협력 팀	1.~6. (생략) 7.~8. <u><신 설></u>		도시 정비 협력 팀	1.~6. (현행과 같음) 7. <u>도시재생 집수리 사업(터새로이 사업) 지원센터 운영</u> 8. <u>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·관리 지원</u>	<u>국토부</u> <u>신규과제</u> <u>수탁요청에</u> <u>따른 분장업무</u> <u>추가</u>
주택 도시 금융 센터	도시 금융 팀	1.~3. (생략)	주택 도시 금융 센터	도시 금융 팀	1.~3. (현행과 같음)	
	임대 금융 팀	1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<u>신청, 심사 및 출자</u> 다. <u>사업약정 협의 및 체결</u> 라. (생략) 마.~사. (생략) 2. (생략) 3. <u><신 설></u>		임대 금융 팀	1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신청 및 심사</u> 다. <u><삭 제></u> 라. (현행과 같음) 마.~사. <u><삭 제>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공임대리츠 출자 사후관리(사업관리)</u>	<u>사업지원 등</u> <u>공공지원민간임</u> <u>대 사업관리</u> <u>필요성 증대에</u> <u>따라 사업장</u> <u>관리 및</u> <u>심사기능</u> <u>전문화 추진</u>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	임대리츠운영팀	1.~2. (생략) 3. 공공지원민간임대 자리츠 출자심사 가. 기금출자 상담 및 안내 나. 자리츠 사업약정 협의 및 체결 다. 자리츠 출자심사 및 집행 4. <u>공공지원민간임대 자리츠 출자 사후관리(사업관리)</u> 가~라. (생략) 마~사. <u><신설></u> 5.~8. (생략) <u><신설></u>	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	임대리츠운영팀	1.~2. (현행과 같음) 3. <u><삭제></u> 4. <u>공공지원민간임대 출자 사후관리(사업관리)</u> 가~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사업약정 협의 및 체결</u> <u>바. 임대리츠 출자집행</u> <u>사. 기금출자 변경승인 관련 업무</u> 5.~8. (현행과 같음) 9. 정부 정책지원(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관리 등)	사업지연 등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사업장 관리 및 심사기능 전문화 추진

5. 기금사업운영단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도시혁신기획처	도시혁신기획팀	1. (생략) 가~라. (생략) 마. <u>리츠</u> 관련 제규정의 관리 바. 기타 기금사업운영단 관련 총무업무 2. (생략) <신설>	도시혁신기획처	도시혁신기획팀	1. 기금사업운영단 총괄 가~라. (현행과 같음) <삭제> 마. 기타 기금사업운영단 관련 총무업무 2. (현행과 같음) 3. 도시재생리츠(기금지원, 보증) 제도 운영 가. 도시재생리츠 제도 및 업무기준 마련·운영 나. 도시재생리츠 관련 질의회신 다. 보증상품 개발(제·규정 및 약관 제정, 신상품 계획 수립 및 상품구조 설계 등) 4.~6. (현행과 같음)	<u>도시재생리츠</u> <u>관련</u> <u>제도업무를</u> <u>도시혁신기획</u> <u>처 업무로</u> <u>편제함</u>
	도시혁신지원팀	1.~3. (생략)		도시혁신지원팀	1.~3. (현행과 같음)	
리츠사업처	리츠기획팀	1. 리츠 기획 가. <u>리츠</u> 관련 기금 및 보증상품 마케팅 나. <u>리츠</u>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정책개선 건의 다. <u>리츠</u> 부문 전략 수립·시행 라. <u>리츠</u> 관련 성과분석 및 목표 관리 마. <u>리츠</u> 예산 집행실적 관리 2. <u>리츠</u> 관련 정부 정책지원 및 홍보 3. <u>리츠</u> 사업 업무 총괄 및 조사연구 4. <u>리츠</u> 관련 대외협력 5. 신규 <u>리츠</u>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	리츠사업처	리츠기획팀	1. 리츠 기획 가. <u>임대리츠</u> 관련 기금 및 보증상품 마케팅 나. <u>임대리츠</u> 관련 법령 제·개정 및 정책개선 건의 다. <u>임대리츠</u> 부문 전략 수립·시행 라. <u>임대리츠</u> 관련 성과분석 및 목표 관리 마. <u>임대리츠</u> 예산 집행실적 관리 2. <u>임대리츠</u> 관련 정부 정책지원 및 홍보 3. <u>임대리츠</u> 사업 업무 총괄 및 조사연구 4. <u>임대리츠</u> 관련 대외협력 5. 신규 <u>임대리츠</u>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	<u>도시재생리츠</u> <u>업무 이관에</u> <u>따라</u> <u>업무대상을</u> <u>임대리츠로</u> <u>명확화</u>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	임대리츠제도팀	1. (생략) 2. 임대리츠 보증(본부 내 임대리츠 및 사회임대주택 <u>기금 지원에 수반되는 보증</u>) 및 도시재생리츠 보증 업무 가.~사. (생략)		임대리츠제도팀	1. (생략) 2. 임대리츠 보증(본부 내 임대리츠 및 사회임대주택 <u>기금 지원에 수반되는 보증</u>) 업무 가.~사. (생략)	<u>도시재생리츠</u> <u>업무</u> <u>업무이관에</u> <u>따라</u> <u>업무대상을</u> <u>임대리츠로</u> <u>업무 명확화</u>

6. 사장직속기구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홍보실	홍보언론팀	1. 광고 및 홍보 가. 중장기 광고·홍보전략의 수립 나. C.I. 관련업무 다. 대내외 광고·홍보의 기획 및 실행 라. 사료의 기록, 수집 및 관리 마. 공사 연혁지 발간·관리 2. 공사 브랜드 관련 업무 가.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 나. 브랜드 매니지먼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다. 브랜딩 개발, 유지, 활용 등 라. 브랜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3.~7. (생략)	홍보실	언론팀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1.~5. (현행 3~7호와 같음)	<u>홍보업무를 팀 명칭이 변경된 홍보협력팀으로 이관</u>
	상생협력팀	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1.~2 (생략)		홍보협력팀	1. <u>광고 및 홍보</u> 가. <u>중장기 광고·홍보전략의 수립</u> 나. <u>C.I. 관련업무</u> 다. <u>대내외 광고·홍보의 기획 및 실행</u> 라. <u>사료의 기록, 수집 및 관리</u> 마. <u>공사 연혁지 발간·관리</u> 2. <u>공사 브랜드 관련 업무</u> 가. <u>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</u> 나. <u>브랜드 매니지먼트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</u> 다. <u>브랜딩 개발, 유지, 활용 등</u> 라. <u>브랜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</u> 3.~4. (현행 1~2호와 같음)	<u>팀 명칭 변경에 따라 부서 내 홍보업무 수관</u>

7. 감사위원회 직속기구

현행			개정안			개정사유
부서	팀	분장업무	부서	팀	분장업무	
감사실	감사기획팀	1. 감사기획 2. 중장기 감사전략 수립 3. 감사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개선 4. 재산·회계 및 업무의 감사 5. 대외감사(검사 포함) 수감의 통할 6. 대·내외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처리전말 보고 7. 각종 사고 및 진정·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8. 기타 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의 조사 및 감사	감사실	감사기획팀	1. 중장기 감사전략 및 연간감사계획 수립·조정 2. 내부통제 점검 가. 내부통제 진단 나. 방만경영 예방 관리 및 사회적 책무위반 점검 다. 중장기 재무적·비재무적 위험관리 3. 감사제도의 조사·연구 및 개선 4. 재산·회계 및 업무의 감사 5. 대·내외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처리전말 보고 6. 각종 사고 및 진정·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7. 기타 이사회, 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의 조사 및 감사	<u>업무범위</u> <u>명확화 및</u> <u>내부</u> <u>업무분장사항</u> <u>반영</u>
	공정감사팀	1. 내부통제 가. 방만경영 예방 관리 나. 사회적 책무위반 점검 다. 중장기 재무적·비재무적 위험관리 2. 재산·회계 및 업무의 감사 3. 대외감사(검사 포함) 수감의 통할 4. 대·내외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처리전말 보고 5. 각종 사고 및 진정·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6. 기타 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의 조사 및 감사		공정감사팀	1. 감사원·국토교통부 등 대외감사(검사 포함) 수감의 통할 2. 감사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3. 재산·회계 및 업무의 감사 4. 대·내외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처리전말 보고 5. 각종 사고 및 진정·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6. 기타 이사회, 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의 조사 및 감사	<u>업무범위</u> <u>명확화 및</u> <u>내부</u> <u>업무분장사항</u> <u>반영</u>
	청렴감찰팀	1. 감사정보 분석 및 감찰활동, 공직복무 총괄 2.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3. 재산·회계 및 업무의 감사 4. 대외감사(검사 포함) 수감의 통할 5. 대·내외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처리전말 보고 6. 각종 사고 및 진정·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7. 기타 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의 조사 및 감사		청렴감찰팀	1. 감사정보 분석 및 감찰활동, 공직복무 총괄 2.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업무 3. 재산·회계 및 업무의 감사 4. 대·내외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처리전말 보고 5. 각종 사고 및 진정·비위사항의 조사와 처리 6. 기타 이사회, 사장이 의뢰하는 사항의 조사 및 감사	<u>업무범위</u> <u>명확화 및</u> <u>내부</u> <u>업무분장사항</u> <u>반영</u>

[참고]

관련 규정

□ 심사위원회규정

제8조(협의사항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업무·제도의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
2. 약관 및 사규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3. 기본사업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4.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5. 신용조사 및 평가기준의 선정과 신용평가등급의 업무적용기준 결정
6. 주전자계산기의 도입 및 전산화대상업무의 용역개발사항
7. 부서별 업무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
8. 현재 시행중인 방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할
사항중 담당본부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 ~ ④ (생략)

규제신설 체크리스트

1. 규제 개요			
규제명	직제 규정시행세칙	담당부서	기획조정실
규제대상	해당없음		
신설사유	직제 규정개정('22.1.27. 제394차 이사회 의결)에 따른 업무분장 명확화		
기대효과			

2. 체크리스트

① 규제 해당 여부	해당 여부 (○, X 표기)	
- 고객 등 특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가?		X
- 고객 등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가?		X
- 불특정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가?		X
- 불특정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가?		X

⇒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규제로 판단(아래 항목 체크)

② 규제개혁 추진전략의 3대 중점방향에 부합하는가?	해당 여부 (○, X 표기)	
- 고객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인가?		
- 회사의 손실 방지,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인가?		
- 비정상적인 업무관행을 폐지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규제인가?		

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?	해당 여부 (○, X 표기)	
- 규제 신설의 목적이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가?		
- 고객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제 방법이 적정한가?		
- 규제 신설로 인한 고객 등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?		
- 규제 신설로 인한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사익 침해보다 회사의 손실 방지 등 공익이 더 큰가?		

⇒ ②~③의 7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모두 충족할 경우 규제 신설을 인정

※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적 자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 첨부